

요약

미국 환경보호청은 2009년 제정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지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고 해당 규제의 낮은 실효성과 경제적 편익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함. 이에 대해 환경·보건단체와 민주당은 법적 기반 약화와 공중보건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리스크 및 자본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올해 2월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함¹⁾
 - 이에 따라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은 상실되며, 자동차·발전소·석유·가스 산업 전반에 적용되던 배출 기준 및 연비 규제의 법적 효력 정지 조치는 2026년 4월 20일 발효될 예정임
 -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공회전 제한(Stop-and-Go) 등 실주행 탄소 배출 저감 기술에 부여하던 오프사이클 크레딧(Off-Cycle Credit)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연기관차 제조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규제에 한정된 것으로 황산화물(SO_x), 질소산화물(NO_x)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존 규제는 유지될 예정임²⁾
- 위해성 판단 규정은 2007년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을 근거로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6가지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및 복지를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청에 규제 의무를 부여한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법적 기반임
 -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요 배출 부문에 대한 감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전 부문에 걸친 규제 강화와 저탄소 전환 정책을 추진함
 -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연비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기 행정부는 2026년 1월 파리협정 재탈퇴를 공식화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제시하는 등 국제 기후 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는 정책 기조를 지속함³⁾
 - 아울러 에너지부(DOE)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 위치한 6개 석탄 발전소의 현대화 및 운영 연장을 위해 총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함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강화함

1) Federal Register(2026. 2. 18.), Rescission of the Greenhouse Gas Endangerment Finding and Motor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Under the Clean Air Act

2) 온실가스 규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을 포함함

3) The White House(2026. 1. 7.),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ventions, and Treaties that Are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 환경보호청은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 통합 규제가 기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근거로 정책 폐지의 정당성을 제시함
 - 최신 기후 영향 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차량 및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하더라도 2100년 기준 지구 평균기온 감소 효과는 0.019℃ 미만, 해수면 상승 억제 효과는 0.7cm 수준으로 통계적 오차 범위 내의 제한적인 영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포괄적인 배출 규제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됨
 - 이번 조치는 전기차 전환 및 배출 저감 기술 도입 부담 완화를 통해 약 1조 3천 억 달러 규모의 산업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신차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⁴⁾

- 그러나 환경·보건단체와 민주당은 위해성 판단 폐지가 국가 기후 대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중보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적 대응을 포함한 규제 권한 회복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방위기금(EDF)은 해당 조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5년까지 10%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후 및 대기 오염 관련 사회적 손실이 최대 4.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함⁵⁾
 - 또한 미국폐협회(ALA), 미국공중보건협회(APHA) 등 주요 단체는 이번 조치가 조기 사망 증가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 측면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⁶⁾
 - 정치권에서도 대응이 본격화되어 민주당은 상원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EPW)를 중심으로 해당 조치를 대기청정 법상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개최 및 온실가스 규제 권한 명문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임⁷⁾

- 위해성 판단 폐지에 따른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리스크 및 자본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온실가스 규제 폐지는 탄소 배출 증가를 통해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 발생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재해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 상승 및 재보험 비용 증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뮌헨 리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액은 약 1,080억 달러로 그중 97%가 기상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 온난화는 극단적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⁸⁾
 - 또한 기후 정책의 일관성 약화는 기후 시나리오와 재해 발생 확률 모형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손해율 및 보험요율 산정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지급여력 관리 및 자본적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책 변화는 에너지 가격 및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장기 부채 구조를 가진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기후 재난의 빈도 및 심도 증가로 보험공급이 축소되고 고위험 지역에서 보장 공백이 확대될 경우 공공-민간 간 위험분담 구조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등 보험 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 EPA(2026. 2. 12.), "President Trump and Administrator Zeldin Deliver Single Largest Deregulatory Action in U.S. History"

5) Guardian(2026. 2. 15.), "Trump touts climate savings but new rule set to push up US prices"

6) AP(2026. 2. 19.), "Public health and green groups sue EPA over repeal of rule supporting climate protections"

7) E&E News(2026. 2. 17.), "Democrats launch probe into endangerment finding repeal"

8) Munich Re(2026. 1. 13.), "Climate change presses on: Devastating wildfires and intense thunderstorms exacerbate losses for insurers"